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-85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1. 11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종전의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이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관련 법령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의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면서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, 그 밖에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과 맞춤법 규정에 맞추어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“없음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마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(2011. 10. 6. ~ 2011. 10. 26.) 결과 : 의견 제출 없음.

2)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 자율평가 : 원안동의

3) 조례·규칙심의회(2011.11.) : 원안의결

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 1부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”을 “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”으로 하고, “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”를 “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재래시장”을 “전통시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”을 “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호의 “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」”을 “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3조의 “재래시장”을 “시장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”을 “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”으로 한다.

제22조제1항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26조제2항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29조 중 “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」”을 “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」”으로, “범위 내”를 “범위”로,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37조제1항 전단 중 “서식에 따라”를 “서식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“서식에 따른”을 “서식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서울특별시 마포구</u> <u>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</u></p>	<p><u>서울특별시 마포구</u> <u>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</u></p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</u>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<u>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</u>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</u>」 ----- ----- <u>전통시장</u> ----- -----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상인”이란 <u>재래시장</u>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·<u>시장활성화구역</u> 및 <u>상점가</u>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.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“<u>임시시장</u>”이란 「<u>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</u>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4조 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<u>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</u>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개설한 시장을 말한다.</p> <p>4. ~ 6. (생략)</p> <p>7. “<u>상인회</u>”란 법 제65조 및 「<u>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</u>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제12조에 따라 <u>시장·시장활성화구역</u> 및 <u>상점가</u>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<u>구청장</u>에게 등록된 조직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</p> <p>1. ----- <u>전통시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「<u>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</u>」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4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----- 「<u>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</u>」 - ----- ----- -----</p>
<p>8. (생략)</p>	<p>8.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적용범위) <u>재래시장</u> 및 상점가 육성 · 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 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.</p>	<p>제3조(적용범위) <u>시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4조(시장의 구역) ① (생략)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 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<u>범위</u> 안에서 지정되도록 하여 야 한다.</p>	<p>제4조(시장의 구역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범위</u> ----- -----.</p>
<p>제7조(인정시장의 기준 등) ① 인정시장은 <u>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 별법 시행령」</u> 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 2조 제1항에 따라 도매업·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여야 한다. 1. ~ 2. (생략) ② (생략)</p>	<p>제7조(인정시장의 기준 등) ① ----- <u>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 별법 시행령」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2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2조(예산의 지원) ① (생략)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 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 항 및 「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 례」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 리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의 <u>범위</u>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 는 보조할 수 있다. ③ ~ ④ (생략)</p>	<p>제22조(예산의 지원) ① (생략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범위</u> ----- -----. 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6조(시장관리자의 지정) ① (생략) ②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 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</p>	<p>제26조(시장관리자의 지정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----- ----- ----- 범위 -----</p>
<p>제29조(시설물의 철거)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시설물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고,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「<u>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</u>」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시설물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,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제29조(시설물의 철거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「<u>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</u>」 ----- 범위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37조(과태료 처분통지 등) ①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송부함으로써 행한다. 이 경우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.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5일 이내의 기간 안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독촉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.</p>	<p>제37조(과태료 처분통지 등) ① ----- ----- ----- 서식의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 ----- ----- ----- ----- 서식의 ----- -----</p>